



대학발전기획위원회 규정

제정일	1997. 6.19
개정일	2020. 3. 1
개정차수	9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- 제 1조 (목적) 동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0. 3. 1)
- 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 ② 위원회는 부총장 및 각 행정처·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심의 및 자문 내용에 따라 교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 [전문개정 2020. 3. 1]
- 제 3조 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심의 및 자문 내용에 따라 위촉 시 별도로 정한다.
 [전문개정 2020. 3. 1]
- 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중 1호 및 2호의 사항은 심의하고, 3호 내지 6호의 사항은 자문한다.
1.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제 규정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 3. 대학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
 4. 구성원의 제안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 5. 대학발전에 관한 일반 사항
 6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[전문개정 2020. 3. 1]
- 제 6조 (연구 및 실무위원 위촉)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중에서 제5조의 사항을 연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, 정리와 위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장은 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7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 8조 (회의록)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9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07. 8.16, 2014.11. 1)
- 제10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된다. (개정 2007. 8.16, 2014.11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